
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황유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8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황유정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길영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박춘선, 유만희,
윤기섭, 윤종복, 이상욱,
이효원, 임춘대, 정지웅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노동복지시설 위탁 대상을 상위법인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으며, 운영이 종료된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.
- 또한 조례명과 본문에 ‘노동자복지시설’, ‘노동복지시설’, ‘노동자복지관’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. 본문의 경우 조례의 해석 및 집행 과정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.
- 이에 노동복지시설 위탁 대상을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라 정비하고, 운영종료 기관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한편, 조례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를 ‘노동복지시설’로 통일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동복지시설 이용제한 사유에 따른 조 제목 변경(안 제5조)
- 나. 노동복지시설 관리·운영 위탁 대상 정비(안 제8조)

다. 위탁 취소에 따른 시설관리 조치 신설(안 제9조)

라. 노동복지시설 현행화 및 이용료 정비(안 별표 1,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”를 “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복지시설의 이용)”을 “(복지시설의 이용제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노동자복지관”을 “복지시설”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제8조로 하며,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시설관리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시설의 원상회복 등을 수탁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.

1.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
2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
3. 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

제6조(중전의 제8조)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노동자복지시설”을 “복지시설”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6조) 제1항 전단 중 “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”를 “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부터 제19조까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7조)의 제목 “(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)”을 “(자치구 복지시설의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노동복지시설”을 “복지시설”로 한다.

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

명 칭	기 능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
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
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

[별표2] 시설 이용료(제6조 관련)

1. 회의실

시설명	면적	기본 이용 시간	금액(원)	비 고
회의실	33m ² 이하	2시간	10,000 ~ 15,000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 -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
	34 ~ 83m ²	2시간	20,000 ~ 30,000	
	84 ~ 165m ²	2시간	30,000 ~ 45,000	
	166 ~ 248m ²	2시간	40,000 ~ 60,000	

2. 강당

명 칭	시설명	기본 이용 시간	금액(원)	비 고
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용
	소강당	2시간	60,000 ~ 120,000	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

지 관				
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다목적홀	2시간	40,000 ~ 80,000	시간은 2시간으 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 본 이용시간 이 용으로 간주함 - 기본 이용시간 초 과 시 이용금액 을 시간당 단가 로 추가 징수함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범위)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(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. 이하 "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복지시설의 이용) ① (생략) ② 시장은 <u>노동자복지관</u> 의 시설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<u>노동자복지관</u>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제5조(복지시설의 이용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복지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복지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<u>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</u>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	제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--- ----- ----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<u>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</u> ----- ----- -----.

시장의 사무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② 복지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·방법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.

<신 설>

제7조(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) 시장은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

-----.

② -----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-----.

제9조(시설관리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시설의 원상회복 등을 수탁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.

1.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
2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
3. 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

제10조(자치구 복지시설의 지원) ----- 복지시설

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
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사용료 등) 시장은 노동자
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
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·징수
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료는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
관리 조례」에 따라 산정하고,
이용료는 별표2의 범위에서 규
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이용료 감면 등) ①·② (생
략)

-----.

제6조(사용료 등) ----- 복지시
설-----
-----.

-----.

제7조(이용료 감면 등) ①·② (현
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1]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 <table><tr><th>명칭</th><th>기능</th></tr><tr><td>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</td><td>노동자 복지증진</td></tr><tr><td>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</td><td>노동자 복지증진</td></tr><tr><td>서울노동권익센터</td><td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td></tr><tr><td>전태일 노동복합시설</td><td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td></tr><tr><td><u>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</u></td><td><u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u></td></tr></table>	명칭	기능	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<u>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</u>	<u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u>	[별표1]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 <table><tr><th>명칭</th><th>기능</th></tr><tr><td>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</td><td>노동자 복지증진</td></tr><tr><td>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</td><td>노동자 복지증진</td></tr><tr><td>서울노동권익센터</td><td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td></tr><tr><td>전태일 노동복합시설</td><td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td></tr></table>	명칭	기능	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																
명칭	기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</u>	<u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칭	기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2] 시설 이용료(제8조 관련) <table><tr><th>명칭</th><th>시설명</th><th>기본 이용시간</th><th>금액(원)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관</td><td>강당</td><td>2시간</td><td>80,000 ~ 150,000</td><td rowspan="2">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</td></tr><tr><td>소강당</td><td>2시간</td><td>60,000 ~ 120,000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서울특별시 강북 노동자 복지관</td><td>강당</td><td>2시간</td><td>80,000 ~ 150,000</td><td rowspan="2">-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</td></tr><tr><td><u>회의실</u></td><td><u>2시간</u></td><td><u>40,000 ~ 80,000</u></td></tr></table>	명칭	시설명	기본 이용시간	금액(원)	비고	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	소강당	2시간	60,000 ~ 120,000	서울특별시 강북 노동자 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	<u>회의실</u>	<u>2시간</u>	<u>40,000 ~ 80,000</u>	[별표2] 시설 이용료(제6조 관련) 1. 회의실 <table><tr><th>시설명</th><th>면적</th><th>기본 이용시간</th><th>금액(원)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4"><u>회의실</u></td><td><u>33㎡이하</u></td><td>2시간</td><td><u>10,000 ~ 15,000</u></td><td rowspan="4">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 -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</td></tr><tr><td><u>34~83㎡</u></td><td>2시간</td><td><u>20,000 ~ 30,000</u></td></tr><tr><td><u>84~165㎡</u></td><td>2시간</td><td><u>30,000 ~ 45,000</u></td></tr><tr><td><u>166~248㎡</u></td><td>2시간</td><td><u>40,000 ~ 60,000</u></td></tr></table>	시설명	면적	기본 이용시간	금액(원)	비고	<u>회의실</u>	<u>33㎡이하</u>	2시간	<u>10,000 ~ 15,000</u>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 -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	<u>34~83㎡</u>	2시간	<u>20,000 ~ 30,000</u>	<u>84~165㎡</u>	2시간	<u>30,000 ~ 45,000</u>	<u>166~248㎡</u>	2시간	<u>40,000 ~ 60,000</u>
명칭	시설명	기본 이용시간	금액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강당	2시간	60,000 ~ 1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강북 노동자 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회의실</u>	<u>2시간</u>	<u>40,000 ~ 80,0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설명	면적	기본 이용시간	금액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회의실</u>	<u>33㎡이하</u>	2시간	<u>10,000 ~ 15,000</u>	-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,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 -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34~83㎡</u>	2시간	<u>20,000 ~ 30,0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84~165㎡</u>	2시간	<u>30,000 ~ 45,0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166~248㎡</u>	2시간	<u>40,000 ~ 60,0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. 강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명 칭	시설명	기본 이용 시간	금액(원)	비 고
	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- 냉난방 이용 금 액 포함 -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- 1회의 기본 이 용시간은 2시간 으로 하며, 2시 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 함 -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 액을 시간당 단 가로 추가 징수 함
		소강당	2시간	60,000 ~ 120,000	
	서울특별시 강북 노동자 복지관	강당	2시간	80,000 ~ 150,000	
	<u>전태일</u> <u>노동복합</u> <u>시설</u>	<u>다목적</u> <u>홀</u>	<u>2시간</u>	<u>40,000</u> <u>~</u> <u>80,000</u>	
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, 조례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상 명확성·통일성을 위한 개정은 **재정소요 요소를 내포하지 않으므로**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안 [별표2]는 이용료 규정의 일반적 특성과 해당 개정의 형식을 고려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별다른 재정소요가 없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이용료 규정은 통상적으로 세입감소가 아닌 증가(이용료 수입)와 관련되는 규정이므로 기존 규정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세입감소를 발생시키지 않음
 - 기규정 부분이 개정안에 의해 회의실과 강당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는 **형식상 변경일뿐** 내용 그 자체가 삭제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이용료 수입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주 무 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35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